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8
----------	-----

제출연월일 : 2006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에 의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발행근거규정이 신설되어 관련규정 정비(안 제7조)
- 공채발행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던 것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개정되어 관련규정 정비(안 제5조)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동조례로 정함(안 제6조~제12조)
- 기금활용도 제고를 위한 융자대상범위 확대(안 제15조)
 -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상·하수도, 도로·공영개발사업등), IT, BT,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경영수익사업, 국가시책사업 추가
- 일부 매출기준의 미비점 보완(안 제7조 별표1)
 - 자동차배기량 적용기준 1,500cc → 1,600cc로 변경
 - 승합자동차 매출대상을 11인승이상 → 1,000cc이상으로 변경
 - 화물·특수자동차 매출대상을 1톤이상 → 1,000cc이상으로 변경

- 과거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점진적 인상하는 특례규정 마련
-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매입규정 삭제
- 각종 계약관련 매출시 매입기준에서 부가가치세 제외 및 계약금액 하한선을 10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공채매입산출금액 절사액을 5천원 → 1만원으로 상향조정

○ 기타, 조문등을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정비

의안전문 : 불 임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관련법령 발췌 : 불 임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기금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2장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
 2.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3.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4.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 발행수입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등에서 기금내 별도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입, 출연하는 금액
 7.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 ② 도지사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 10%범위 안에서 제1항제3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토록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등록증 또는 허가증 교부 시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계약자의 대금청구시

제10조(공채의 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발행일을 기준으로 5년거치 후 일시 상환하며,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공채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도보, 기타 방법에 의하여 상환 개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채의 시효) 공채에 대한 원리금 청구권은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공채의 중도상환) ① 공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개시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공채의 매입원인이 된 등록, 허가, 계약등이 공채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 철회, 반려된 경우
 2. 공채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공채를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상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발행이율을 적용하며, 공채의 발행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공채업무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 등록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운영

제14조(기금의 융자)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도로 및 유통단지 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4.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5.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6. 정보통신기술사업(IT), 생명공학기술사업(BT)
7.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체육시설업, 관광사업
8. 기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제16조(융자순위) 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등 공공투자사업, 재해복구사업,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7조(융자조건) ①융자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도지사가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 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이율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융자약정 및 융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융자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제16조의 우선순위 및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식증대를 위한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채상환 원리금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3. 기타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회계 개시 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한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채 발행계획
2. 공채 상환계획
3. 기금 융자계획
4. 융자금 회수계획

제23조(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의한다.

제4장 기금운영 심의

제24조(기금운영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공채발행등 기금조성사항
3. 융자사업 순위결정 및 융자액 배분
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기 발행된 공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채매입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시의 공채매입기준은 별표 1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 1,6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4/100,
2,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6/100
2.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 1,6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2/100,
2,000cc이상은 등록세과표의 3/100

[별표1]

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분야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② 1,6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8/100 등록세과표의 12/100
	나.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2/100
	라.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 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② 1,600cc 이상 ③ 2,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4/100 등록세과표의 6/100
	나.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5/100
	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1/100
	라. 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① 1,000cc 이상	등록세과표의 0.5/100

분야별	매입대상	매입기준
3. 기타 허가 및 등록	가. 도로·하천·구거부지의 점용허가 (1년이상 장기허가하시는 최초 점용료 부과시만 매입)	점용료부과액의 5/100
	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① 농지(전,답) ② 임야, 잡종지, 초지, 과수원등 기타지목	① m^2 당 1,500원 ② 동지역 : m^2 당 3,000원 읍·면지역 : m^2 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	m^2 당 60원
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가.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나.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

[별표2]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8조 관련>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1. 기관·단체	<p>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제외)</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p> <p>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p> <p>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p> <p>마.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p> <p>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p> <p>사. 「민법」·「상법」 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 또는 수탁업무와 관련된 공채의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p> <p>아. 정당법에 의한 정당</p> <p>자.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p> <p>차. 제사, 종교, 학술, 예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관련부처나 시도에 등록된 단체</p>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2. 사업·행위	<p>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이전등록</p> <p>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5)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p>다. 주민 직영사업</p> <p>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축 및 농·임·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단,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임·어업의 범위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다)</p> <p>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p> <p>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의 구매</p> <p>사.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도로·하천·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p> <p>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허가·계약</p> <p>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개조·수선 및 대체취득시의 등록, 허가 (지방세법 제108조의 적용대상에 한함)</p> <p>차.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의 신규등록 (지방세법 제268조의 적용대상에 한함)</p> <p>카. 법인 합병 및 분할시의 자동차 이전등록</p>

관 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계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제7조(관리자)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마다 관리자를 둔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질 또는 유사한 사업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에 걸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관리자 1인을 둘 수 있다.

②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임기제로 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채)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입을 얻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인 운전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회전기금의 재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건설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자금으로 필요한 때

②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예산안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사업운영계획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통합) ①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그 기업의 회계업무를 통합한다.
②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출납원과 현금취급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기금조성 및 사업별융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기금운용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7조(기금의 운용기준)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공채발행계획 및 공채상환계획과 사업별·관할지방자치단체별 융자 계획 및 융자금회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5.3.31>
③제1항의 기금은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효과가 큰 다음 각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융자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및 유통단지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2. 사업의 수행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경영수익사업
3. 의료보장 및 재해복구 등을 위한 사업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정부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등